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이영심·구본승 강북구의원 공동 대표발의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본회의 통과



이영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과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공동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4월20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게 됐으며, 조례안에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감사대

상 범위 규정, 감사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통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 감사실시 절차,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이영심 의원과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와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입주민간의 불신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게 됐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신문 5면

이영심·구본승 강북구의원 공동 대표발의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본회의 통과



이영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과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공동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4월20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게 됐으며, 조례안에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감

사대상 범위 규정, 감사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통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 감사실시 절차,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이영심 의원과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와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입주민간의 불신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게 됐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정

이영심 · 구본승 위원장 공동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강북구의회 이영심 운영위원장(삼양, 송천, 삼각산동)과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이 공동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하게 됐으며, 조례안에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감사대상 범위 규정, 감사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통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 감사실시

절차,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공동 대표발의자인 이영심 의원과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와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입주민간의 불신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이영심 의원(왼쪽)과 구본승 의원.

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게 됐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